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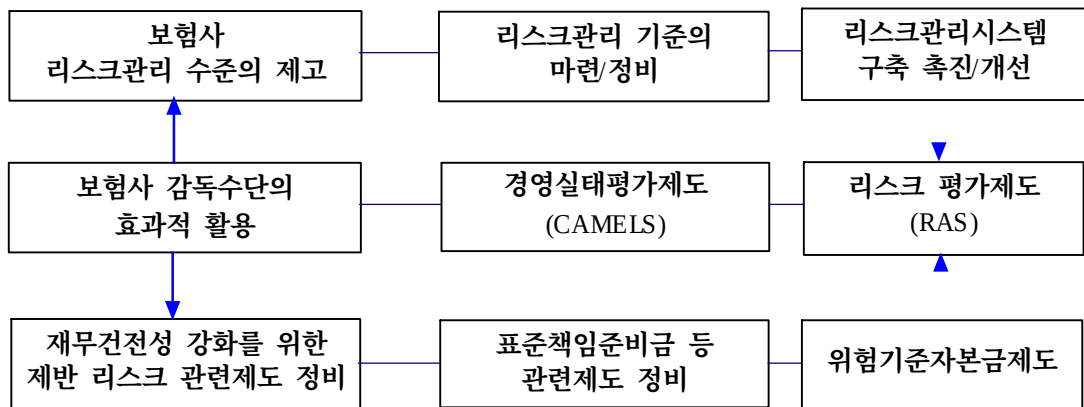
테마진단

1. 리스크 중심 감독의 전개 방향에 대한 검토 *

가. 리스크 중심 감독의 의의

- 리스크 중심의 감독이란 리스크관리 기준의 정비와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리스크관리 수준의 제고, 리스크감독·검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독수단의 개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리스크관리 제도의 보완·도입이라는 세 가지 축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일련의 리스크감독체계라고 할 수 있음(<그림 1> 참조).

<그림 1> 리스크 중심의 감독



- 이러한 리스크 중심 감독의 방향은 금융산업의 글로벌화와 점업화 추세에 대응하여 나타난 선진 감독체제의 공통적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고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김해식 선임연구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내용은 보험개발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개인 견해를 밝힘.

□ 금융감독원도 2002년 ‘보험회사 리스크감독 강화 추진계획’을 통해 감독의 무게중심을 리스크 중심의 평가체제로 본격적으로 전환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

○ 추진계획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 (1) 첫째, 리스크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을 위하여 ‘보험사 통합리스크측정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의 제시와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을 통해 보험사 자체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제고한다는 것과,
- (2) 둘째, 경영실태평가의 각 부문별 리스크관련 비계량 항목을 신설·보완하여 리스크를 반영한 평가결과에 따라 약정서·양해각서 체결 등 세부조치기준을 취하는 리스크평가를 위한 감독수단의 개발과 이에 따른 인력과 조직을 정비한다는 계획임.

□ 금융감독원의 추진방향은 금융시장의 흐름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몇 가지 점에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추진계획의 방향성이 보다 명료하게 나타나 시장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보다 능동적인 대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첫째, 추진계획 (1)은 리스크관리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의 정비나 필요한 기준의 제정 계획이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균형있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추진계획 (2)는 기존 경영실태평가제도(CAMEL)와 새로운 리스크평가제도(RAS)간의 중장기적 역할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셋째, 표준책임준비금이나 지급여력제도 등 기존 리스크관리제도의 정비나, 도입이 검토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제도들이 현재 진행중

인 리스크 중심 감독체제 내에서 서로 어떻게 연계되는지 전체적인 윤곽을 보여줌으로써 <그림 1>에서처럼 세 번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현재 추진계획에서는 리스크평가제도를 지탱할 하부구조로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셋째 항목에서 지적한 것처럼 관련 제도에 의한 하부구조는 보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네 가지 사항들에 주목하면서 전반적인 국내 상황을 살펴보고, 특히 리스크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캐나다와 미국의 사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리스크감독 강화 추진 계획의 향후 전개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함.

나. 국내 현황과 선진 사례¹⁾

1) 국내 현황

- 현재 리스크관리관련 기준과 관련해서는 2001년 작성된 ‘보험사 리스크관리 모범기준’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2000년 ‘보험사 리스크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실태점검 장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험사 특성에 부합하는 정형화된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는 미치지 않고 있음.
- 한편, 현행 리스크관리공시체제는 법령상 보험사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체제를 지향하고 있으나, 정형화된 공시체제가 마련되지 않아 유용한 리스크관리정보가 현실적으로 보험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임.

1) 캐나다와 미국의 사례는 리스크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함.

- 감독당국측면에서의 실질적인 리스크감독은 경영실태평가제도중 위험관리항목을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음.
 - 경영평가제도의 위험관리항목인 비계량 항목은 리스크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항목이 다수 존재하고 특성상 주관적인 의사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고유의 한계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상시 모니터링제도로써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이에 따라 추진계획에서는 최근 리스크평가제도를 도입한 은행의 사례에서처럼 ‘보험사 경영평가제도 개선(2002.12.27)’을 통해서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한 비계량 항목의 신설로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향후 리스크평가제도와 경영실태평가의 역할 중복의 문제가 나타날 여지는 남아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일반적으로 리스크관리제도는 보험사 리스크관리를 위한 감독당국의 법적·제도적 제도를 총칭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규제, 보험사 내부관리조직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어, 이들 제도의 미비가 여전한 가운데 추진계획에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 청사진이 보이지 않고 있음.
 - 현재 감독당국은 미국식 표준책임준비금제도 등과 같은 리스크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현금흐름형 ALM제도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어 아직 불완전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아직 도입되지 않은 리스크별 준비금제도, 리스크기준 자본금제도도 리스크감독과 충분한 연계성을 가지도록 추진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 리스크관리와 정보생산 주체인 보험사 내부 조직도 아직 초기단계로서 정비가 필요한 분야로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맞물려 논의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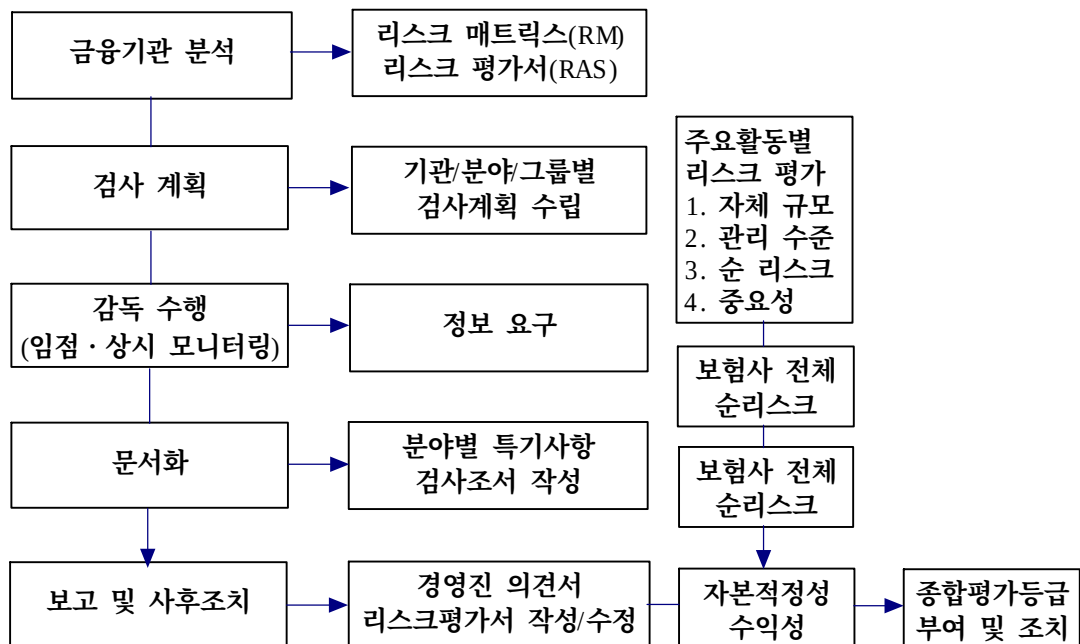
2) 캐나다의 사례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통합감독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해당감독기관인 OSFI(Office of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of Canada)가 1999년 '미래 감독의 기본 틀(Supervisory Framework : 1999 and beyond)'을 통해 리스크평가 중심의 새로운 감독체제를 제시함.
 - OSFI는 금융산업의 글로벌화와 겸업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의 감독관행을 조사하여 자국의 환경에 맞는 독특한 형태의 감독체제를 고안하게 되었음.
 - 1999년 '건전한 사업·재무 관행에 관한 기준(Standards of Sound Business and Financial Practices)'을 발표하고 리스크평가체제로 전환함.
- OSFI는 기본 감독 틀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적을 제시함.
 - (1) 리스크 자체와 리스크관리수준을 분리 평가하여 리스크평가를 제고하고, (2) 발생 리스크와 시스템 전체적인 이슈를 조기에 발견해 내는 것에 역점을 두며, (3) 감독자원을 리스크에 집중하여 비용효과성을 달성하고, (4) 리스크 중심의 금융기관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임.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몇 가지 핵심 원칙들을 마련하였음.
 - (1) 중요성(materiality)의 관점에서 포함되어야 할 관련 자회사, 합작사들을 아우르는 통합기준(consolidated basis)으로 금융기관 감독
 - (2) 리스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관심영역에 감독자원을 집중
 - (3) 정밀감독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 빈도를 줄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빈약한 금융기관은 매년 감사를 시행
 - (4) 재무분석, 법규준수, 내부감사, 리스크관리, 경영진 및 이사회 감시

기능과 같은 리스크관리의 주요 통제기능들에 대한 검사 포함

- (5) 검사시 발견사항과 권고사항에 상응하는 조치수준 결정하고, 그 내용을 보험사에 적시에 전달
- (6) 등급은 임점검사(on-site review)를 기준으로 부여하며, 개발된 평가기준은 본격시행 전까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보험산업에 제공
- (7) 수집 정보 자체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와 보험계리인을 적극 활용하여 재무정보와 부채정보에 대한 감독자원의 중복 투입 억제
- (8) 동류그룹간 비교(peer groups comparison)를 통해 산업의 리스크관리 모범기준을 발굴하고, 동 정보를 보험사 경영진 및 이사회와 공유하여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확보

<그림 2> 캐나다 OSFI의 상시 리스크평가 프로세스



- 또한 OSFI의 리스크평가체제는 그 자체가 보험사의 경영평가를 수행하는 감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²⁾, 해당 리스크평가 등급에 따라 감독조치

가 취해지고 있음(<그림 2> 참조).

- o OSFI는 보험사가 지니는 순리스크(net risk)가 리스크 자체(inherent risks)와 더불어 리스크를 줄이려는 리스크관리의 질, 즉 리스크관리의 수준(quality of risk management)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
- o 또한 금융기관의 순리스크를 중요한 사업활동별로 측정하여 리스크 규모(상/ 중/ 하)와 리스크관리 수준(강/ 중/ 약)을 결정하여 2차원의 리스크 매트릭스(risk matrix)를 작성함으로써 보험사의 전체 순리스크를 산출한 후 경영평가등급과 그 변화(증가/ 유지/ 감소)의 방향을 결정함.
- o OSFI는 각 금융기관별로 리스크평가서(RAS; risk assessment summary)를 작성하는데, 여기에서 리스크매트릭스(RM), 주요 사업활동 개요, 리스크관리 통제기능의 효과성 평가, 자본의 적정성 및 수익성 평가, 지난 사업년도의 중요 사건, 감독조치수준 등이 제시됨.

□ 캐나다식 리스크평가 감독체제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하나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리스크관리 및 관련 제도들에서 우리나라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직접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o 캐나다 리스크평가서의 내용은 그 핵심이 되는 주요 사업활동 분류에 있어서 대략적인 기준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리스크 자체의 규모 추정은 별개로 하더라도 리스크관리 수준의 계량화도 베일에 가려져 있음.
- o 그러나 분명한 점은 캐나다식 리스크기준자본금제도(MCCSR), 자산적정성 제도, 풍부한 계리·회계분야의 전문인력 보유는 물론 보험부채평가의 독특한 회계제도 등 정보제공에서 적절한 관련 제도들을 구비하고

2) 1998년 캐나다는 기존 CAMELS를 폐기함.

있다는 점임. 이로써 리스크매트릭스와 리스크평가서의 작성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됨.

3) 미국의 사례

- 우리나라의 경영실태평가제도가 미국 은행감독의 주요 수단인 CAMELS를 벤치마킹해 온 것임을 고려할 때, 미국 은행권의 리스크평가는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미국에 있어서는 보험분야에서는 여전히 리스크기준자본금(RBC)제도를 골격으로 유지하고 있고 부분적 재무분석 이외에 경영실태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음.
 - 그러나 은행권의 경우에는 CAMELS를 은행의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제도로 적용하여 왔으나, M(management)부문에 집중하는 임점검사(on-site review/ examination)를 통해서 기업의 리스크를 부분적으로 평가하는데 그치고, 과거 정태적 재무분석에 주로 의존하는 CAEL부문의 상시평가(off-site monitoring) 역시 조기경보기능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다만, 이러한 CAMELS는 리스크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않고 있으나, 임점검사와 상시모니터링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상시모니터링의 예측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FDIC의 경우 부실금융기관 예측기능을 수행하는 SCOR모형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 리스크감독의 강화 추세에 따라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예금보험공사(FDIC)를 중심으로 캐나다의 리스크평가체계와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기존의 경영평가제도인 CAMELS와 별도의 리스크평가체계를 병행하는 형태로 도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은 현재로서는 캐나다와 미국의 리스크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한 관련 구조의 상이함 등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임.
- 한편, OCC는 리스크평가를 리스크별로 구분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어 캐나다보다는 단순한 형태로 리스크매트릭스를 작성하고 있으며, OCC는 각 금융회사를 주요 사업활동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나머지는 <그림 1>과 유사한 절차를 따름.
- 미국이나 캐나다 모두 공통점은 금융기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상주 감사역·감사역을 지정하여 리스크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그의 평가서를 기초로 감사계획을 작성하는 피드백과정을 거치고 있음.

다. 향후 리스크 중심 감독의 전개 방향 검토

-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정합성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의 정비와 리스크공시 기준의 정착으로 리스크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여건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됨.
- 실제로 규정 및 기준의 정비 및 제정은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보다 상대적으로 더 유용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사 자체의 관리체계 및 정보산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사회-리스크관리위원회-리스크관리조직에 대한 명확한 기능 정비 등이 일련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제도적 연계성을 지니는 방향으로 감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경영실태평가제도(CAMEL)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기경보를 위한 감독수단으로 채택했던 것이므로, 사실상 이를 대신할 리스크평가제도(RAS)와 경영실태평가제도의 향후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향후 민간부문의 보험사에 대한 경영평가 활성화와 캐나다의 사례 등을 감안한다면 경영실태평가제도를 리스크평가제도로 일원화하는 단계적 변화를 검토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경영평가에서 현행 벌칙위주에서 검사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하는 감독방식의 전환으로 부실하거나 부실가능성이 농후한 보험사에 감독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방향성 검토도 필요할 것임.
- 리스크관리제도들인 표준책임준비금제도와 지급여력제도(리스크기준자본금제도)는 상호 보완하는 제도들로서, 리스크평가제도의 실질적 평가는 이들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자산적정성분석과 추가적인 책임준비금 적립 규정을 통해 표준책임준비금제도를 실질화하고, 부분적 리스크만을 고려해 총량 척도로 보여주는 현행 EU식 지급여력제도를 리스크기준자본금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인 리스크평가제도의 정착이 앞당겨질 것이므로 관련 리스크관리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전체적인 조감도를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임.
 - 또한 감독당국에서 추진하는 통합리스크측정시스템을 통해서 리스크평가제도를 이끌어 갈 것인지, 아니면 현행 총량적 지급여력제도를 리스크 중심의 지급여력제도로 개선하여 이를 통해 리스크평가제도를 이끌어 가고 측정시스템은 자체 정보의 수집·분석에 역할을 한정하는 형태로 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음.

- ☐ 그 외에 위임계리인 제도, 리스크관리 전문인의 양성 프로그램, 전문인들이 리스크관리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는 제도의 마련은 향후 감독체제를 리스크 중심으로 이끌어나가는 데에 중요한 원천이 될 것임.